

12. '91造成用地 供給計劃

資料提供: 韓國土地開發公社

공사에서는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91년도중 전체 공급택지 15,178천평의 40%에 이르는 6,000천평을 개발·공급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지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비축토지도 3,000천평을 공급할 계획임.

특히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임대주택이나 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공급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음.

공사는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91년에는 주거용지 19,835천m²(6,000천평), 공업용지 9,918천m²(3,000천평), 비축토지

9,917천m²(3,000천평) 등 총 39,670천m²(12,000천평)을 공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 10,770천m²(3,258천평)은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용지로 지자체에 무상양여하여 도시기능 정비 및 주거생활 편의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임.

주요 사업지구별 공급대상용지는 별첨과 같음.

- 첨부: 1. '91 하반기 조성용지 공급계획 1부.
2. 주거 및 공업용지 분양자격 1부.

I. '91. 조성용지 공급계획

1. 총괄

(단위: 천m², 천병)

구분	공급대상			비고
	계	유상	무상	
합계	39,670(12,000)	28,900(8,743)	10,770(3,258)	
주택용지	19,835(6,000)	11,973(3,622)	7,862(2,378)	
공업용지	9,918(3,000)	7,010(2,121)	2,908(879)	
비축토지	9,917(3,000)	9,917(3,000)	-	

2. 시도별 공급내역

(단위: 천m²)

구분	공급대상			비고
	계	주택용지	공업용지	
합계	29,753	19,835	9,918	
서울	186	186	-	
대구	991	991	-	
인천	2,417	853	1,564	
광주	765	419	346	
대전	3,807	2,672	1,135	
경기	10,194	10,099	95	
강원	2,443	679	1,764	
충북	355	355	-	
충남	203	203	-	
전북	1,670	545	1,125	
전남	2,596	206	2,390	
경북	1,733	234	1,499	
경남	1,954	1,954	-	
제주	439	439	-	

3. 사업지구별 공급계획

가. 주거용지

(단위: 천 m²)

지 구 명	공 급 면 적			지 구 명	공 급 면 적		
	계	유 상	무 상		계	유 상	무 상
합 계	19,835	11,973	7,862	부천중동	88	57	31
서울중계	186	135	51	안양평촌	665	410	255
대구칠곡1	259	168	91	안양포일	35	26	9
대구칠곡2	302	193	109	수원원천	62	48	19
대구성서	430	288	142	평택비전1	129	77	52
인천구월	74	48	26	평택비전2	45	28	17
인천갈산	84	49	35	안성석정	123	78	45
인천연수	684	414	270	기흥구갈	17	11	6
인천부평	11	11	-	오산켄리	23	16	7
광주하남	100	62	30	용인수지	504	329	175
광주문흥	319	196	123	구리교문	10	10	-
대전둔산1	1,906	1,238	668	춘천석사	4	4	-
대전둔산2	340	121	219	춘천퇴계	240	149	91
대덕주단1	49	40	9	삼척사직	50	31	19
대덕주단2	265	179	86	동해북평	127	78	49
대덕주단2-2	100	86	14	속초조양	196	122	74
대전중촌	12	12	-	속초청초	62	42	20
성남분당	3,668	1,882	1,786	청주봉명2	53	53	-
고양일산	2,916	1,549	1,367	청주용암	257	165	92
고양중산	365	212	153	제천청전2	45	45	-
고양화정	1,040	716	324	은양용화	5	3	2
하남신장	409	246	163	서산읍내	83	50	33

지 구 명	공 급 면 적			지 구 명	공 급 면 적		
	계	유 상	무 상		계	유 상	무 상
논산강산	115	65	50	울산태화	34	20	14
전주삼천	84	58	26	울산화봉	475	1,300	175
김제요촌	165	110	55	양산북정2	120	75	45
군산나운	296	198	98	김해내외1	949	650	299
여천돌산	183	117	66	진해자은	145	96	49
여천쌍봉3	23	23	-	거제장평	87	55	32
경산임당	32	32	-	충무도남	128	81	47
경산옥산	202	132	70	제주일도	362	1,227	135
울산삼호2	16	16	-	서귀포서호	77	46	31

나. 공업용지

(단위: 천m²)

지 구 명	공 급 면 적			지 구 명	공 급 면 적		
	계	유 상	무 상		계	유 상	무 상
합 계	9,918	7,010	2,908	이 리 제 2	80	61	19
인천남동	1,564	1,009	555	군장산업	1,038	858	180
광주하남	346	283	63	목포대불	2,390	1,331	1,059
대덕연단1	280	222	58	포철제2	27	22	5
대덕연단2	855	792	63	포철제3	582	471	111
송 탄	95	70	25	왜 관	835	570	265
동해북평	1,764	1,274	490	경주용강	25	20	5
이 리 제 1	7	7		대구논공	30	20	10

※ 사업추진여건 변경에 따라 지구별 공급계획이 수정될 수 있음.

I. 실수요자택지 분양자격

1. 제1순위

사업지구내에서 토지 또는 건물을 공사에 제공하고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

2. 제2순위

사업지구의 단독택지 공급공고일을 기 준하여 과거 1년간 당해지역에 거주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저축에 가입하여 18회차 이상을 납입한 자

- ① 계약고 5백만원 이상의 중장기 주택 부금 가입자
- ② 월 2만원 이상의 청약저축 가입자
- ③ 월 1만원 이상의 근로자 재형저축 또는 근로자 증권저축가입자
- ④ 월 3만원 이상의 내집마련 주택부금 또는 근로자주택마련저축가입자

3. 제3순위

실수요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4. 제4순위

※ 분양대상자의 자격규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서 제2순위, 제3순위 해당자중 공급 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사로부터 분양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실수요자 택지를 공급 받았거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분양아파트나 조합아파트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동 순위자격을 주지 아니함.

II. 공장용지 분양자격

- 1. 공장용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아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 2.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장의 입지추천을 받아야 함.
- 3. 공업단지관리법 제3조의 적용을 받은 공업단지의 공장용지는 상공부장관이 고시하는 입주요령에 의함.

Ⅲ. 조성용지 공급가격 체계

구 분		수 도 권 및 부 산 권	대 도 시	지 방 중소도시	비 고
공동주택지	임대주택지	90	80	70	
	국민주택지	100	90	80	
	분양주택지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국민 학교 용 지		70	70	70	
이 주 자 택 지		원가 이하	원가 이하	원가 이하	
협 의 양 도 인 택 지		110	110	110	
단 독 주 택 용 지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상 업 용 지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공 장 용 지		조성원가	조성원가	조성원가	

※ 특히 공동주택지의 70% 이상을 임대, 국민주택지로 공급함.